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2)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9조제6항)

다.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반입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20. 6. 15 예정)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반입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민간위탁비 산출 용역 시 연간 20억 정도 운영비를 예상했으나, 시운전 결과 연간 13억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여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리터당 25원으로 현실화하고 수집처, 수거량, 수거차량 등을 명시한 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